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1

제출년월일 : 2013.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규모 변경(안 제2조제1호)
  - 100억원 미만 공사 → 200억원 미만 공사

나. 소규모공사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 및 제10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7. 4 ~ 7. 24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 결과	조치 사항
•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이해충돌 가능성 (제척,기피,해촉 규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권고)	• 권고안 반영 - 안 제7조제2항 신설 (종전 제2항~제5항은 제3항~제6항으로 이동)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 검토결과 : 알기쉬운 법령 정비 대상 법령이므로 분석평가 제외

라. 2013년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2013.8.13)

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로, “기관에게”를 “기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제102조제1항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조경공사”라 함은”을 ““조경공사”란”으로, “파고라”를 “그늘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를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치수공사”라 함은”을 ““치수공사”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감독업무로 이를 ”을 “감독업무는”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탁 할”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시설물공사

3. 기계설비공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함에 있어”를 “선정할 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탁 대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

상 9명 이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를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반 회무와 회의록의 정리ㆍ보관"을 "모든 사무와 회의록의 작성 및 정리ㆍ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를 "권한행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ㆍ검사결과"를 "보고ㆍ검사 결과"로, "위법ㆍ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으로 한

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수탁기관에게”를 “수탁기관에”로 한다.

제16조 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 기관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술관리법 제28조의4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란 ---------- -- 그늘막 --.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및 그 밖의 ------- --.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6. "치수공사"란 ----------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
第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조(적용범위) -- 조례에서 ----------- 따른다.
第4조(업무의 위탁)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第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 호의 어느 하나---------------------------- 감독업무는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 -------.
1. 주요시설물 공사	1. 주요시설물공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계설비 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第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第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선정할 때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수탁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소규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제5조에 따라 -------------------------.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 해당 --.
<신 설>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토목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 회무와 회의록의 정리·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	⑥ -- 1명-- 모든 사무와 회의록의 작성 및 정리·보관-----------------.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	②-------------- 권한행사-------------------------.

로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30일 전---.
제11조(비용 징수 등)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당해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징수 등) -- 해당 ------------------------------.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할 때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고·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명령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
제14조(사무편람) ① (생 략)	제14조(사무편람)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②수탁기관이 사무편람------- ----------------------------

얻어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 호의 어느 하나------------------ 발생한 경우----------------------------.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수탁기관에 ---------------------------.
제16조(보칙)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